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 3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지난 10월 21일자로 개정 고시 되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안전관리비 사용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전담기술지도와 정기기술지도로 구분한다.(제2조 및 제12조)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표준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재무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가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영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영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직 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령개정

### 제12조(기술지도)

- ① 전담기술지도는 월1회 이상, 정기기술지도는 매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당해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전국 도서지방(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은 제외한다)은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는 공사종류에 따라 순수건설공사(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제외),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로 구분한다.

[나]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보험요율표에 의하여 5개 종류로 구분하고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계상 비율을 낮게 한다.(제4조, 별표1)

### 제4조(건설공사의 분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별표 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비율(X) /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 5,148천원	2.26(%)
철도, 궤도신설공사		2.33(%)	1.49(%) /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 1,647천원	0.94(%)

주) 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2. 별표 1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화되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궤도신설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단독발주에 한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다] 발주자의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 자기 공사자로 하고, 설계변경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토록 한다.(제5조)

### 제5조(계상기준)

-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6개항으로 분류 구체화하고 항목별 총 비율을 150%로 하여 현장 특성에 따라 신축성있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최소 사용기준을 규정한다.(제8조, 별표2, 별표3)

### 제8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한다.

②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자</li> <li>-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li> <li>-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등, 양중기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li> </ul> </li> <li>●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 기본급의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li> <li>-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건축물 파쇄에 한함)</li> <li>-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li> <li>-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li> <li>-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li> <li>-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li> </ul> </li> </ul>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법령개정**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li> <li>- 건폭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li> <li>- 콘크리트 공작물(높이가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li> <li>-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li> <li>-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li> <li>- 기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 작업</li> <li>●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li> </ul>	
<p>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안전난간</li> <li>- 추락방지용 방망</li> <li>-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li> <li>- 개구부 덮개</li> <li>-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 방책 등</li> </ul> </li> <li>●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호선반</li> <li>- 낙하물 방지망</li> <li>- 경사법면 보호망(덮개)</li> <li>-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li> </ul> </li> <li>●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각종 안전입간판 및 표지표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및 위험경보기 등의 경보설비</li> <li>- 방랑 유도등 및 위험 경보기등의 경보설비</li> </ul> </li> <li>●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진설비, 방음설비</li> <li>-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li> <li>-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li> </ul> </li> <li>●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li> </ul>	<p>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p>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울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li> <li>-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권과방지장치</li> <li>-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li> <li>-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li> <li>-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 전단기의 방호장치</li> <li>-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li> <li>-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li> <li>●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안전보건시설 등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li> <li>●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li> </ul>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li> <li>-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li> <li>- 신호수용 반사조끼, 용접용토시(자켓), 수상작업자용 구명용품</li> </ul>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li> <li>-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li> <li>●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li> <li>●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li> <li>● 각종 가스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 등 유해작업환경측정장비에 소요되는 비용</li> <li>●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 기구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li> <li>●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 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li> </ul>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법령개정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p>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li> <li>- 신규 및 보수</li> <li>● 사내 자체 안전보건 교육</li> <li>- 관리감독자 정기교육</li> <li>- 근로자 정기교육</li> <li>- 신규채용시 교육</li> <li>- 특별안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li> <li>- 작업내용변경시 교육</li> <li>●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li> <li>●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li> <li>-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li> <li>-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li> <li>-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li> <li>-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li> <li>-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li> <li>● 교육교재, 교육용 팸플릿,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자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견학, 사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안전보건행사비(연2회 이하), 포상비, 각종서식비등 사업장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li> </ul>	<p>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p>
<p>6.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li> </ul>	<p>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p>

주]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경비원, 교통정리원(도로화·포장, 철도보수공사 등), 자재정리 및 폐자재 처리원, 청소원,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외의 인건비
- 가설울타리, 외부비계, 급수시설, 지하수 개발, 세면·샤워시설, 간이화장실, 냉온방 시설 및 부대비용, 안전보건 이외의 용도로 겸용되는 사항(무선통신, 안전차량, 구명선 등),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
-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세륜시설 등)
- 작업복, 우의, 면장갑, 코팅장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병원·의원 등에 지불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하는 진료비, 방역비, 방충비 등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의 합계는 150% 이하이나 이를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하여 100%를 사용하라는 것이며, 해당 항목별로 제한된 사용기준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다.

[별표 3]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 정 율	20%	40%	60%	80%	100%
사 용 기 준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주: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간 값은 적선보간법에 의한다.

[마]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

### 제9조(목적외 사용방지)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

### 제10조(확인)

-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 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실행예산 집행시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한다.(제11조)

### 제11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 ① 사업주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는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13조)

제13조(기술지도 계약)

- ①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종료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공사 현장내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담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40퍼센트
  2. 정기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30퍼센트
- ⑤ 제4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

[자] 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가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제14조)

제14조(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의무)

- 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시에는 법, 영, 규칙,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제27조의 기술상의 지침 및 영 제26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은 당해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에 대한 수수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기초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정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